

구미시일반폐기물맞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1996. 10.

제 출 자 구 미 시 장

1. 의결주문

구미시일반폐기물맞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불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폐기물관리법,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근거법령에 맞게 보완

3. 주요골자

- 조례 명칭을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수정
-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의 과태료부과기준중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규격봉투지정판매업소외의 규격봉투 판매행위 과태료부과 기준 명시

4. 조례내용 : 불임과 같음.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명을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한다.

제3조의 조제옥중 "청문"을 "이견진술"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제4조제1항중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을 "과태료처분 통지서를"로하고 "장소에서[별지제3호서식]에의한 과태료 처분및 납부 통지서를"을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로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성한 녹색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중 "과태료납부 부과 처분이"를 "과태료 부과 징수가"로하고 "[별지제5호 서식]에"를 "[별지제3호서식]에"로한다.

제5조(과태료부과기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 한다.

제6조제1항중 "그 서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를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별지제7호서식]"을 "[별지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중 "과대로 처분을 받은자"를 "피처분자"로하고 "지방세 세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9조중 "[별지제8호서식]"을 "[별지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1호내지 3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제4호내지 8호서식]을 [별지제2호 내지 6호서식]으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단 위 : 원)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법제24조제5항)	1,000	2,000	3,000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제30조제3항 및 제44조의2제1항)	1,000	2,000	3,000	
	3.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자가 조치명령을 받고도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법제44조의2 제3항)	1,000	2,000	3,000	
	4.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이,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기물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제26조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0	7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점수(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C등급)	
	5.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제24조제3항, 제41조)	1,000	1,000	1,000	
	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30조제4항)	1,000	1,000	1,000	
	7.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제39조제1항)	1,000	1,000	1,000	
	8.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제40조)				
	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0	400	50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0	500	1,000	
	9.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제43조제1항)	300	500	1,000	
	10.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제43조)	1,000	1,000	1,000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47조제1항)	1,000	1,000	1,000	
	1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분류하지 아니한 자(법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나.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대기환경보전법에 제외되는 행위에 한함)	100	200	300	

적용권	부과대상	부과액 (천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유지하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13.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제16조 제2항)	300	500	1,000	
	14. 규격봉투 지정판매소가 아닌 업소에서 규격봉투 판매행위를 할 경우	100	200	300	

적 목 번	부 과 대 상	부 (과 전) 액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 및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 제2항) 가. 재활용 지정 사업자 및 제1종 지정 사업자의 경우 나. 제2종지정 사업자및 지정 부산물 배출 사업자의 경우 2. 제품의 포장 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기준보다 25% 미만 초과한때 (2) 기준보다 25% 이상 50%미만 초과한때 (3) 포장부나 50%이상 초과한때 나. 포장 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때 (2)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때 (3) 기준보다 3회를 더 포장한때 다. 폴리에틸렌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 폴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500 1,500 2,000 2,000 2,500 1,000 1,500 2,000 2,000 2,000	2,500 2,000 2,000 2,500 3,000 1,500 2,000 2,500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적용 품	비고	단위 (천 원)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시)	
바. 식품류·절화류·죽히제품의 제조·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열화를 구다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0	2,500	3,000	
비.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이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의 감열화를 구다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사. 가전제품을 불복별로 연간2만 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가 인공재를 감열화 전년도 실적과 같은 연도 계획 제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0. 제조자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인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3. 자원의절약과 자원유통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이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철판(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 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0쓰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1,500	2,500	3,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천 단위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나. 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연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수시계의 사용자체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500	1,0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준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500	3,000	
	마.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대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체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 자체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500	3,000	

조종반	부과대상	구 (과 전) 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바.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화용품의 교환, 판매 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점용품(대형점,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가 정용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노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4. 쓰레기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제16조 제2항)	1,500	2,500	3,000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300	
	나. 다량매출차로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 (법제34조 제3항)	300	500	1,000	

적응법	부과대상	부과액 (천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률	1.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법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700	8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800	900	1,000	
	나. 정화조				
	(1) 1일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1일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전용법	부과대상	부과액 (천 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 방류수 수질기준 20% 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 수질기준 20% 이상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법제11조, 제26조 또는 제33조 제2항)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200	200	2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단)) 액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회)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500	500	500	
	(2) 모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4. 모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 및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말기자(법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모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5. 모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법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모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2,000인 이상인 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100	200	500	
	(2) 축산폐수매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300	500	1,000	

적용법	투과대상	부과금(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후)	
	(3)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전자기 설치한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 이상	100	200	3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마니한 경 우				
	(1) 1일 처리용량이 10m ³ 미만인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의 경우	100	300	500	
	(2) 1일 처리용량이 10m ³ 이상인 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인 경 우	300	5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다. 1일 처리용량이 100m ³ 이상인 오 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정화조에서 방출되 는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	500	700	1,300	
	마.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 니한 경우	200	300	500	
	6. 간이 오수정화조이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법제15조제1항)	500	700	1,000	
	7. 폭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 조치등의 명령을 위반한자 (법제17조) 이상	200	300	400	
	8.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법제24조제2항또는제4항)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액 (천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01후)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00	300	500	
	9.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자(법제25조제3제2항)	200	300	500	
	10. 영업구역 기타필요한 주거를 위반한 자(법제35조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지원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0	300	500	
	11. 분뇨관련영업자가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300	400	500	
	12. 기술관리인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법제42조제2항)	300	500	1,000	
	13.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법제42조제3항)	300	500	1,000	
	14.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자(법제43조)	500	700	1,000	
	15. 장부를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법제44조)	300	400	500	
	16.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법제46조제1항)	300	5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소멸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만 한다.
5. 축산폐수정화시설 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 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결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

(을)

(피처분자 통지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한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에 의거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진술기한 다음날 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 평 시 장 인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세입제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구 마 시 장 인

(정)

(개인 등시용)

과태료납부영수증

발행번호	계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주)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 납부영수증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구 미 시 장 귀 하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우수분뇨처리업자등 에대한과태료부과심수조례 제3조 (정분)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 태료처분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 기 간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불지할수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등)①시장은 과태 료처분을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피처분자에게[별지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별지제 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반부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및 납부 통지서를 반부할수 있다.	구미시폐기물관리및우수분뇨처리업자등 에대한과태료부과심수조례 제3조 (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③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 생 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등)① 과태료처분 통지서 들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현행	개정안
②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납부 부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 징수가 [별지제3호서식]에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를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시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①.....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

현 항	개 정 안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제7호서식]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등을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하머 시장에게 ⑤ [별지제5호서식] 제7조(강제징수) 피처분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제9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별지제6호서식]